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인 권 정 책 기 본 법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부겸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국무위원 박범계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 정부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으로서 지난 2007년부터 수립·시행되어 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수립과 이행, 추진체계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여 통합적·종합적 인권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인권이사회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심의·권고 이행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권고이행을 위해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정책 반영을 통한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2)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30인 이내의 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3)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인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음

4)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집행위원회 구성·운영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인권기구 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 수립·이행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 권고안 제출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인권정책의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

3) 추진실적 점검 결과와 추진성과 종합 평가 결과는 일반에 공개

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제출 절차를 명시함

2)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 후 이행계획을 6개월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위원회는 심의·조정을 통해 개인진정 권고가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을 장려하여야 함

2) 기업은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하여야 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정부는 기업의 인권존중 증진을 위한 지침, 정보공개 표준 등 마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공직 유관단체 및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인권교육 관련 단체 및 평생교육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위한 연구·개발, 각종 인권교육 활동,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

3)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가능

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날과 인권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없음

법률 제 호

인권정책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모든 개인이 인권을 누리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서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인권교육”이란 모든 사람이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인권 침해나 부당한 처우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사고와 행동방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교육, 훈련, 정보의 제공, 인식의 제고 및 학습 활동을 말한다.
3. “국가보고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해당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조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나. 국제연합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위해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
4. “국제인권기구 권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제3호가목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후 국제인권조약기구가 우리나라에 제시한 권고
   나.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해당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s) 심사 후 우리나라에 채택한 권고
   다.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한 특별보고관 등 전문가가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방문결과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제시한 권고
5. “국제인권조약기구”란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감시기구로서 조약당사국의 조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

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5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의 개발·추진을 위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관계 단체·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권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제7조(국가인권정책위원회) ①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인권정책의 추진 방향 설정
2.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점검 및 추진성과의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변경
4. 인권정책에 관하여 관계부처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과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인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관련된 사안의 심의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연구·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권정책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시·도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도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인권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기구 운영 등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여

야 한다.

⑤ 그밖에 인권기구 설치 및 기능, 운영,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기관의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①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제11조(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제출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심의 전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취임일부터 1년 이내에 5년 단위의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핵심정책과제와 추진 방안
3.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인권정책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 ①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심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종료 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인권정책의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추진성과 종합 평가 결과를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실적 점검과 추진성과 종합 평가 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의 추진실적 점검 결과 및 제5항의 종합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인권정책 추진실적의 점검 및 추진성과의 종합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권 관련 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안 제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보고서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

제1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국가보고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총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총괄하여 작성한다.

② 누구든지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총괄

기관의 장은 국가보고서 작성 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제출된 의견을 국가보고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총괄 기관의 장은 국가보고서 제출 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 기관의 장은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외교부를 통해 국제연합에 제출한다.

⑤ 총괄 기관의 장은 확정된 국가보고서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국제인권조약 등의 소관 부처, 의견 제출, 국가보고서 작성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보고서 심의) ① 국가보고서 심의는 해당 총괄 기관의 장이 준비하여야 한다.

② 총괄 기관의 장은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와 심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제인권기구 권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을 통해 제3조제4호나목의

권고가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총괄 기관의 장은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식 국문본을 확정한 후 영문본과 함께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기업과 인권

제21조(국가의 인권보호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제도・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의 실천을 장려·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제절차를 제공・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기업의 인권존중책임) ① 기업은 기업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의 인권침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업은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기업의 인권존중 증진) ① 정부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의 실천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

도록 정보공개 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침 및 정보공개 표준 마련,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설정·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및 조달 절차에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관련된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제6장 인권교육

제24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의 교직원과 유아・학생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종사자・수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금・보호시설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8.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 그 밖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그 시행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인권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학교 등 인권교육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2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위한 연구·개발 및 각종 인권교육 활동, 그리고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사회 인권교육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권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위한 연구·개발 및 각종 인권교육 활동, 그리고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인권교육을 위한 협력) 제24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장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비영리단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인권의 날) ① 국제연합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고 인권보호와 존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인권의 날을 전후한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날과 인권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이 법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인권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378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연 락 처	(02) 2125 - 9825